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년 7월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21일,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7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99년 7월27일)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가. 제안이유

- 행정규제개혁관련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항 정비계획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행정규제 대상조항

-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 책무규정)
- 제5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
- 제13조(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 제14조(공중화장실의 관리상태 개선명령)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승인)
-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등)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법률우위의 원칙)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유보의 원칙)」로 규정되어 있음.

■ 종합검토결과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으로 확대하고 있고 법령에 근거없는 제5조(공중화장설치기준),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제13조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을 두고 있으며, 법률에 위임이 없는 제14조(공중화장실의 관리상태 개선명령),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등)설치자에게 의무부과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이 되므로 행정규제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 법위반에 되는 조항만 삭제하여 운영할 경우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 조례로 폐지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첨 부 :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1부